

# 검토의견서

【어르신복지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정(안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어르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가 “어르신 행복도시”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.
- 나. 현재 운영 중인 성북구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가 미흡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.
- 다.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노인복지 정책의 내실화 (안 제6조~제16조)

-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관련 사업이 증가 되고 있어, 관련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
- 초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,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
- 노인의 건강증진, 사회활동의 장려,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설치,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
-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, 독립적인 삶과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편의증진, 자살예방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(안 제17조~제23조)

- 전문적으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수 15명 이내의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함
-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

## 3. 검토의견서

### 가. 검토내용

제정안	수정안
제12조(취약계층노인 등 지원) 1항 ○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~	제12조(취약계층노인 등 지원) 1항 ○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~
제18조(구성) ○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~ ○ 2항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. ○ 3항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및 다양한 계층·지역 또는 노인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. ○ 4항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.	제18조(구성) ○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 ○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및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으로 한다. ○ 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1인 2. 노인복지 관련 교수 3. 노인복지 관련 시설 대표 4. 노인복지 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○ 5항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.
제19조(위원의 임기) ○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~	제19조(위원의 임기) ○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~

### 나. 검토결과

-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

사료됨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